

특정장애인의 직종·범위 및 고용비율(제26조 관련)

특정 직종	특정장애인의 범위 및 고용비율	비 고
안마사	<p>특정장애인의 범위 및 고용비율은 「장애인복지법 시행령」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 중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시각장애인(안마사의 자격을 가진 자만을 말한다): 100분의 70 이상 2. 제1호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각장애인(안마사의 자격을 가진 자만을 말한다): 100분의 30 이하 	<p>특정장애인 고용비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수에서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.</p>